#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준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885

발의연월일: 2025. 4. 16.

발 의 자: 김준혁ㆍ이수진ㆍ김동아

박지원 · 김영호 · 박희승

김병주 · 염태영 · 강유정

윤종오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한국고전 자료는 고전문헌의 주요 소장·연구기관에서 소장자료 및 번역자료를 디지털화하여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있음. 그러나 최근 K-콘텐츠의 인기 상승과 더불어 관련된 정보의 유지·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한국고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K-콘텐츠의 생산 및 확산 기반이 되는 문화자원 중 하나인 기록유산 자료의 관리주체가 분산되어 있어 자료의 접근 및 검색이 용이하지 않음. 문화적 영향력의 확대는 원천자료가 되는 문화자원을 통해이루어지나, 자료 접근성의 한계로 인하여 원천자료를 통한 콘텐츠 소재 개발이 어려운 현실임.

이에 한국고전번역원에서 국가고전번역사업 데이터의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규정함으로써 원천자료의 접근성을 제고하여

문화적 영향력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1조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##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번역함으로써"를 "번역하고 국가고전번역사업의 정보관리를 통하여"로 한다.

제6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호(종전의 제6호) 중 "제5호까지의"를 "제6호까지의"로 한다.

- 6. 국가고전번역사업의 정보관리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③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혹은 공공기금 등에서 지원하는 번역사업 수행 주체는 번역관련 정보를 번역원에 제공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조(목적) 이 법은 한국고전번	제1조(목적)		
역원을 설립하여 고전문헌을			
수집·정리· <u>번역함으로써</u> 한	<u>번역하고 국가고전번</u>		
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	역사업의 정보관리를 통하여		
전통문화를 계승・발전시키는			
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			
제6조(사업) 번역원의 사업은 다	제6조(사업)		
음 각 호와 같다.		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		
<u>&lt;신 설&gt;</u>	6. 국가고전번역사업의 정보관		
	<u>리</u>		
<u>6.</u> 제1호부터 <u>제5호까지의</u> 사업	<u>7제6호까지의</u>		
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정관으			
로 정하는 사업			
제15조(업무협조 등) ①・② (생	제15조(업무협조 등) ①・② (현		
략)	행과 같음)		
<u>&lt;신 설&gt;</u>	③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그		
	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		
	공기관 혹은 공공기금 등에서		
	지원하는 번역사업 수행 주체		
	는 번역관련 정보를 번역원에		
	제공할 수 있다.		